

오전 11:55

← 가이드 Q&A Talk Talk

방사장 “최대”, “최저”라는 문구를 쓰지 못한다면, 사은품 제공 시 “약정기간, 요금제에 따라 사은품 최대 25만원 지급가능” 이란 문구는 쓸 수 없는 건가? 오전 11:20

바른이 위 문구에 쓴 “최대”는 허위 광고의 “기”에 해당하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이 아닌 한정적 의미이며, 결합유형, 약정기간 등 중요사항을 함께 안내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. 오전 11:22

방사장 남은 위약금을 지원하겠다고 광고하려 하는데, 어떻게 광고하면 될까? 오전 11:24

바른이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대납해준다고 광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, 위약금 조회를 대행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. 오전 11:26

방사장 위의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위약금을 지원한다고 광고하려면, 3년 약정 기준으로 인터넷은 19만원까지, 인터넷+방송 혹은 전화는 22만원까지, 인터넷+방송+전화는 25만원 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광고할 수 있습니다. 오전 11:28

방사장 현재 우리가 광고하는 인터넷은 “현 지역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”이며, 측정결과 값도 있는데, “최고 속도”라는 표현으로 광고는 할 수 없는 건가? 오전 11:30

바른이 타사의 최고속도 측정결과 등 구체적인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여 객관적 실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위·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오전 11:32

방사장 제휴카드를 결합하여, 할인된 요금으로 광고 하려고 하는데, 어떻게 광고하면 좋을까? 오전 11:35

바른이 제휴카드에 따른 요금할인은 그 할인액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해주어야 하며, 카드 사용에 따른 전월 실적 기준을 포함하여 광고할 수 있습니다. 오전 11:38

방사장 허위·과장광고에 적발되었을 시,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? 오전 11:42

바른이 허위·과장광고가 적발되는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등 사정 조치,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고, 위반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(금지행위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3개월 이내로 신규 모집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. 오전 11:48



이 가이드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광고물 제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무 요령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유통망 건전화 및 결합상품 가입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•••

허위·과장광고 유형



+ 허위 광고

-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‘최대’, ‘최고’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
-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‘공짜’, ‘무료’ 및 ‘0원’ 등으로 표시
- 위약금 관련,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



과장 광고 +

- 기간 · 다양 · 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 할인 금액만을 표시
- 실제 지급금액이 아닌 최대 지급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
- 요금 할인을 경품에 포함하여 경품 혜택으로 표시



+ 기만 광고

-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,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,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
- 중요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고 광고

“방사장, 통신판매점을 열다

